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9 선고 2020나832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, 담당변호사 강주영, 박근희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

변 론 종 결 2021. 8. 10.

판 결 선 고 2021. 9. 9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4. 선고 2020가단5036072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15. 10. 20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. 12. 24. 접수 제105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0행의 "20197"을 "2017"로 고치고,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

가. 명의신탁 주장

1) 피고는,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인데 망인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복귀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2)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으로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망인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주장

1) 피고는, D이 망인으로부터 2억원 이상을 특별수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에게 상속분이 없거나 미미하여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(2/9)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약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약'이라 한다)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2)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(민법 제1008조),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나 이러한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·입증하여야 한다.

3)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D의 신혼집 구입비용으로 2002. 1. 4. 25,132,687원, 같은 달 12. 54,700,000원, D의 전세자금으로 2007. 11.경 130,000,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D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등의 특별수익이 있어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피고의 선의 주장

1) 피고는 D이 자신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대어받았고,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재산도 있어 이에 대한 정산의 의미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D의 사해행위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2)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2010. 6. 28. D으로부터 채권금액을 280,000,000원으로 한 지불각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되나, D이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 등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없으며, 앞서 본 피고와 D의 관계, 이 사건 분할협의를 경위 또는 동기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유성, 판사 최은주, 판사 정 원

별 지 목 록

1. 서울특별시 광진구 호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광진구

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

위 기와

지붕 3층 연립주택 동

1층 382.95㎡

2층 382.95㎡

3층 382.95㎡

지층 439.92㎡

(토지의 표시)

1.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 1621.2㎡

(건물의 표시)

(1) 점 수: 1987년 3월 30일

(2) 건물번호:

(3) 건물내역: 철근콘크리트조 57.15㎡

(대지권의 표시)

(1) 대지권의 종류: 소유권대지권

(2) 대지권의 비율: 1621.2분의 56.60

